

#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제주특별자치도	친환경농업정책과	과 장 김영준	064-710-3050
		팀 장 김현철	064-710-3161
		담당자 고근영	064-710-3162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 적

-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
-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·유통·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

### 2. 근거법령

-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」 제4조

### 3. 사업추진 개요

- 사업기간: 2025. 3 ~ 12월
- 사 업 비: 133,334천원(자체재원 80,000, 자부담 53,334)
  - 지원조건: 보조 60%, 자부담 40%
- 지원규모: 2개소
  - \*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
- 2025년 지원계획

사 업 명	사업량	사 업 비(천원)			비고
		합계	보조(60%)	자담(40%)	
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	2개소	133,334	80,000	53,334	

## II. 사업시행내용

### 1. 지원대상자

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 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 조직체
- ※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」에 의함
  -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합이 1ha이상
  -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여야 함

### 2. 지원제외

- 허위·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
- 최근 3년간 동일사업(장비 및 시설)을 지원받은 경우
  - \*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포함
- 농업법인인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
-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

### 3. 사업(지원)내용

-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(수확기, 파종기 등)
-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(저온저장고, 집하·선별시설 등)
- 친환경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 (세척, 포장, 가공시설 등)
- ※ 단순 장비(저온탑차 등)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

### Ⅲ.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

#### 1. 사업신청

- 신청장소: 제주특별자치도(친환경농업정책과)
  - 제출서류
    - 1)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    - 2) 사업계획서 및 세부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 서식)
    - 3) 단체소개서(별지 제3호 서식), 토지(건물)등기부등본, 법인등기부등본, 회의록(법인의 경우 이사회 등 회의록), 법인구성원(회원)명단(품목 및 재배(인증)면적 등 현황 포함), 법인재무재표증명(최근 2년간),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사본),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(사본), 지방세 납세증명서, 법인사업자등록증(사본), 견적서(장비 등 물품인 경우), 설계내역(시설 공사인 경우) 등
- ※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

#### 2. 사업대상자 선정(확정) 방법 등

- 사업신청 후 심사표(붙임 1)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

### Ⅳ. 사업추진 단계

- 보조금 교부신청
    -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(설계내역서, 견적서, 인증서 사본 등)
    -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(명의: 단체명)
      - \*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    - 차세대 민간보조금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반드시 신청 및 정산
  -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(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)
   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
- ※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, 시방서 등 제출

-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
  -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(계약관련 서류 첨부), 완료 시 완료보고서 (준공관련 서류 첨부) 제출
-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
  -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
  -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
  - 보조금교부결정서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
    - 자부담지출서, 세금계산서, 납품서, 준공내역서, 사진, 인증서 등
  -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
- 보조 사업비 정산
  - 사업비 집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, 인증서, 정산회계검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
-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(법인)명의로 관리
 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·장비에는 “보조사업 안내문” 을 부착하고,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“보조사업 부기등기” 를 하여야 한다.
- 보조시설의 사후관리
  -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·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자체 운영·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,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한다.
  - 시설·장비별 사후관리 기간

재산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건물 및 부속시설	준공일	10년간	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
주요 기계·장비	구입일	5년간	*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보조사업 부기등기

## V. 행정사항
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수행업체 선정
-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(계약관련 서류 첨부), 완료 시 완료보고서(준공관련 서류 첨부) 제출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서 같이 제출하여야함
- 2023년부터는 차세대 지방보조금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보조금교부 신청 및 사업비 집행, 정산 등을 수행해야 함

<붙임 1>

##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

(신청자: \_\_\_\_\_ )

항 목	기 준	배점	심사	비고
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	<input type="radio"/> 5ha 이상(30) <input type="radio"/> 4ha~5ha 미만(28) <input type="radio"/> 3ha~4ha 미만(26) <input type="radio"/> 2ha~3ha 미만(24) <input type="radio"/> 1ha~2ha 미만(22)	30		
구성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	<input type="radio"/> 12농가 이상(30) <input type="radio"/> 9농가~11농가(26) <input type="radio"/> 6농가~8농가(22) <input type="radio"/> 5농가 이하(18)	30		
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* 증가 면적(ha) ‘25년 신청서 → ‘25년말 기준	<input type="radio"/> 4ha 이상(15) <input type="radio"/> 3ha~4ha 미만(14) <input type="radio"/> 2ha~3ha 미만(12) <input type="radio"/> 2ha 미만(10)	15		
자부담 비율	<input type="radio"/> 50% 이상(15) <input type="radio"/> 40% ~ 50% 미만 (12) <input type="radio"/> 40% (10)	15		
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	<input type="radio"/> 3년 연속 지원(-20) <input type="radio"/> 2회 지원(-15) <input type="radio"/> 1회 지원(-10) <input type="radio"/> 지원 받은 실적 없음(10)	±20		가감점
합 계		100		

평가자 : (부서) 친환경농업정책과 (직위/급) \_\_\_\_\_ (성명) \_\_\_\_\_ (인/서명)

확인자 : (부서) 친환경농업정책과 (직위/급) \_\_\_\_\_ (성명) \_\_\_\_\_ (인/서명)



##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### 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추진시,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3. (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·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### ※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

1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
2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
3. (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)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(이름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 등)
4. (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)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-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

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# 사 업 계 획 서

사업개요

- 사업명:
- 사업기간:
- 사업내용:

- 경비총액:       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       %)
- 보조금액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- 자부담액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 고

보조사업의 효과

- 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해안변 환경정비	사무관리비	500 630	· 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 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보조비목*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<작성예시> 해안변 환경정비	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	500 630	· 장갑 500원×100개×10회 = 500천원 · 현수막 70,000원×3개×3회=630천원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: [서식4 참고자료] 민간 보조비목·세목을 참고하여 작성
- ③ 금액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건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# 세부사업계획서

## 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비 :     천원(보조           , 자부담           )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
##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·출하 물량

품목	면적(ha)	출하물량(톤)	출하지역 (납품처)	비고
합계				

\*\* 품목별로 작성

##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·출하 계획

품목	면적(ha)	생산계획량(톤)	출하지역 (납품처)	비고
합계				

\*\* 품목별로 작성

## 사업비 산출내역

세부 사업명	항목	사업비		비고
		금액(천원)	산출내역(원)	

\*\* 산출내역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

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계획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농가(호)					
면적(ha)					

○

○

자부담 확보계획

○

보조사업의 효과

○

○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## 단체 소개서

[ 단체명 : ]

주소 및 연락처	주소	(우 12356)	
	연락처	• 전화 : • 팩스 :	• 홈페이지 : • E-Mail :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록일
	대표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• 사무국 직원수 : 명 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
	회원수		
설립목적	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 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		
단체연혁	• '81.11. 8 ○○○○ 설립(창립) • '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 • '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		
2025년 예산현황	• 예산총액 :      천원(보조금 :      천원, 자체수입 :      천원) • 재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 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 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 %), 사업수익( %), 기타( %)		
2024년 주요사업 실적	• “정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 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		
2025년 주요사업 계획	• 2~3건 작성 • 별지작성 가능 •		

##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○○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○○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○○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### < 벌칙 규정(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) >

#### 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97조부터 제40조)

**제37조(벌칙)**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**제38조(벌칙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
2.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
**제39조(벌칙)**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
2.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
3.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
#### ○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
**제40조(양벌규정)**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XX . . .

□□□단체 대표 (서명)

□□□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(서명)

□□□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